

신·구조문대비표 (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)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이하 같다)-----

(1)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
목 및 나목(영 제10조제2
항제11호, 같은 조 같은
항 제14호부터 제17호 및
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
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
는 제외한다)에 따른 전
문가

(1) -----
----- (-----
----- 같은 조 -----

-----)

(2) 주권상장법인, 영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

(3) (한국어)

(3) (생략)
(4) 영 제6조제1항제5호부
터 제7호까지의 법률에
따라 설립·설정된 집합
투자기구

(5) (생략)
나. 채권상장법인, 영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

(5) (현행과 같음)

나.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

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
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.

다만, 제1-2조 제6항에 따
른 원화표시채권 또는 외

도 말 총자산이 5,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

<신 설>

5. 유동화증권(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방
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)으로서 다음 각 목의
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가. (생 략)

나.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·양수되는 유동화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6. ~ 8. (생 략)

③ (생 략)

제2-4조의2(매출신고서 면제요건) 영 제124조의2제6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

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증권의 발행내역을 법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 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것

5.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·양수되는 유동화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제4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
6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-4조의2(매출신고서 면제요건) ① -----

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4.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영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(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

③ 영 제124조의2제2항제2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투자자가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의 시세, 발행인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. 이 경우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.

④ 영 제124조의2제2항제4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”이란 투자매매업자

<신 설>

<신 설>

<p>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에 대한 기본정보, 투자위험, 그 밖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공·설명하고, 투자자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5-5조(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)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「상법」 제341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주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.</p> <p>1.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 전에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며,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 중에 매수주문(정정매수주문을 포함한다. 이하 같</p>	<p>다)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다음 가목에서 정하는 가격과 나목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 중 매수주문은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----- 그 가격은 매수주문 직전의 체결가격과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과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가.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와 매수주문 직전까지 체결된 당일의 최고가 중 높은 가격</p> <p>나. 매수주문시점의 최우선 매수호가와 매수주문 직전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10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</p> <p>2. ~ 4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</p> <p>제5-9조(자기주식 처분기간 등) ① ~ ④ (생략) ⑤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</p> <p><삭 제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-9조(자기주식 처분기간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</p>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
연 락 처 (02) 2156 - 9876 (02) 2156 - 9912